

2011학년도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 시 : 2011년 1월 21일(금) 12시 10분

장 소 : 선관회의실

제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011년 1월 21일(금), 12:10~13:40

2. 장 소: 선관 회의실

3. 참석위원(5명)

오수근 위원장	기획처장
신경식 위원	재무처장
차미경 위원	학생처장
서미옥 위원	예산과장
정창모 위원	삼덕회계법인이사

불참위원(3명)

류이슬 위원	학부 총학생 회장
김지영 위원	학부 총학생 부회장
이혜경 위원	대학원 학생 대표

4. 안 건: 2011학년도 등록금산정을 관한 심의 건

5. 회의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라 한다) 개회 예정 시간인 11시까지 류이슬 위원, 김지영 위원, 이혜경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여러 차례 참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 5분이 지난 후에도 참석의사가 없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함.
- 12시 10분 류이슬 위원, 김지영 위원, 이혜경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하기로 하고, 오수근 위원이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제2차 위원회

개최 일시에 대한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원 모두 동의함.

- 201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수근 위원을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함.
- 오수근 위원장은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심의기구로 총 구성 8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최를 선언함.
- 위원장은 등심위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기, 성격, 등심위 결정에 대한 의사표현 등 운영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함..
- 신경식 위원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차미경위원은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경우 총학생회의 임기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원이 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모든 참석 위원이 이에 동의함.
- 오수근 위원장은 등심위의 성격에 대해 등심위는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며, 등록금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설명함. 다만 심의위원의 결과를 의결로 결정하느냐 개별위원의 의사표시로 보고하느냐 대한 논의를 요청함.
- 신경식 위원은 등심위의 결과를 의결로 결정할 경우 등심위를 의결기관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나열하여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오수근 위원장은 등심위가 의결기관은 아니므로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만 명시하고 의결 정족수는 규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원들 모두 이에 동의함.

- 회의도중(12시 25분경) 총학생회장 및 일부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회의장 앞에 와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차미경 위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등심위 요구안)을 등심위에 제시함.

<요구안>

1. 등심위의 권한: 등록금책정은 등심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른다

2. 등심위의 운영

① 의사정족수: 각 측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의결정족수: 재적위원의 전원 찬성(만장일치)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학년도 등록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학년도 등록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③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출석위원, 안전, 발언내용,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등심위의 참관 자격

등심위의 참관인은 중앙운영위원회, 대학원 학생회 임원으로 한다.

4. 자료 송부 및 열람에 관한 요구안

① 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 상대방은 48시간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료 열람을 원할 경우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 등심위는 학생들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음.

- 위원장은 학생들의 요구안을 안전으로 상정하여 위원들이 논의함.

- 아래와 같은 검토 결과를 차미경 위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함.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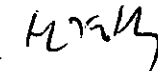
1. 등심위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심의기구로 규정된 위원회이며, 본교의 등심위도 이 권한을 넘을 수 없음.
 2. 운영에 관한 요구안중 2(등심위의 운영) 중 ①과 ③ 및 3(참관자격)에 관한 요구안은 등심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임.
 3. 운영에 관한 요구안 중 ②는 등심위의 권한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하는 것임.
 4. 자료 송부 및 열람에 관하여는 요구하는 자료내용이 특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함.
- 등심위 제2차 회의를 모든 참석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1월 24일(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12시 40분에 폐회함.

2011년 1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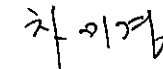
오 수 근 위 원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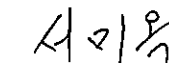
신 경 식 위 원



차 미 경 위 원



서 미 옥 위 원



정 창 모 위 원

